

## ■ 정기적금 특약

2021.04.08 개정

### 제1조(약관의 적용)

정기적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합니다)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돈마련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(가입대상)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.

### 제3조 (계약기간)

적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정합니다.

### 제4조 (신규 및 납입금액)

이 예금의 가입금액 및 월 입금액은 최소 100원 이상으로 하며 가입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.

### 제5조 (월 입금액의 납입)

1. 월 입금액의 납입일은 계약 시 해당하는 날로 합니다. 다만,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2회차 이후의 납입일을 해당월 내에서 체하하거나 해당월 10일 이내에서 체상하여 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만기일도 이에 따라 체하 또는 체상합니다.

2. 납입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납입일로 하고, 그 월에 납입 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을 납입일로 합니다.

## 제6조 (지급구분)

1. 적금의 지급은 중도해지지급, 만기지급으로 구분합니다.

가. 중도해지지급: 만기 이르기 전에 계약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

나. 만기지급: 이 계약에서 정한 전 회차의 월 입금액을 납입하여 만기일에 계약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

## 제7조 (이자)

이자는 해지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.

1. 만기해지 이자

계약 입금 총 횟수의 납입을 끝낸 적금의 만기해지 시에는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.

2. 중도해지 이자

납입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월 입금액은 일 적수를 계산하여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
### 3. 만기 후 이자

이 예금을 만기일이 지난 후 지급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만기일 현재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된 정기적금 만기 후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
#### 제8조 (만기해지 시 월 입금 납입 지연이자)

전 회차의 월 입금액을 납입하고 만기해지 시에 월 입금액 납입지연이 있을 때에는 지연일수와 정한 납입일보다 선납한 일수를 차감 후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지급이자에서 차감합니다. 그러나 지연이자를 차감 지급이자가 중도해지이자 계산방식으로 산출한 지급이자보다 적을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자 계산방식에 따라 지급합니다.

#### 제9조 (만기일 앞당김)

월 입금액을 전 회차 납입한 적금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만기일 전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기일을 앞당길 수 있으나 월 입금액 최종 회차 수입 해당일에는 만기일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.

## 제10조 (계약액의 변경)

계약액의 변경은 예금주, 계약기간, 매회 납입일자 및 만기일이 같은 경우로 제한합니다. 다만,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계약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## 제11조 (계좌의 분할)

계약액을 1좌에서 2좌 이상으로 분할할 때에는 전조의 경우로 제한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

1. 기존 계약 계좌는 무이자로 지급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고 납입필 금액을 변경 계약분의 월 입금액에 충당합니다.
2. 통장의 발행일은 변경 처리일자로 하되 그 계약일을 기산일로 하여 만기일을 정합니다.
3. 신 통장의 월 입금액 납입일자는 기존 계약계좌의 납입일자로 합니다.
4. 신·구 통장과 신규신청서 겸 인감신고서에 변경사유를 기재합니다.

## 제12조 (인터넷뱅킹 등 비대면매체를 통한 예금 거래)

### 1. 예금의 신규 및 해지

이 예금의 신규 및 해지는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매체를 통해서 합니다. 다만, 해지는 창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.

### 2. 통장의 발급

가. 이 예금은 원칙적으로 통장을 발급하지 않습니다.

나. 거래처가 통장발급을 요청할 경우 은행은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통장발급 수수료를 징구하고 통장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### 3. 이자율

인터넷뱅킹 등 비대면매체로 가입 시 이자율은 이 예금의 이자율을 따르며 이와는 별도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이자율을 추가 적용합니다.

### 4. 입금자원의 제한 및 출금의 제한

이 예금은 실명 확인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(유동성 모계좌, 이하 '근거계좌'라 한다)로부터 출금된 금액을 자원으로 신규 및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해지금액 및 예금담보대출에 의한 대출금액의 출금은 근거 계좌로의 입금 방법으로 제한합니다.

### 5. 담보 및 양도 제한

이 예금은 본인 이외 제3자 담보제공 및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
## 제13조 (자동해지)

이 예금은 자동 해지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해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(2019.05.21신설)

**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**

부 칙

이 개정 특약은 2013. 1. 2 부터 시행합니다.

단, 시행일 이후 신규 계좌에 적용합니다.

부 칙

이 개정 특약은 2019. 04. 10 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이 개정 특약은 2019. 05. 21부터 시행합니다.

시행일 이전 기 가입 계좌에도 변경된 특약을 적용합니다.